

# 서울시립대학교 기업지원본부 운영 세칙

제정 2016. 3. 3 규정 제 17호  
개정 2021.11. 1 규정 제 48호  
개정 2023. 1. 2 규정 제69호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세칙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4조의 1 제2항에 의한 기업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 칭) 본부의 명칭은 “기업지원본부”(이하 “본부”라 한다)라고 한다.

제3조(기능) 본부는 서울시립대학교의 가족기업을 포함하는 중견, 중소 및 벤처기업(이하 “기업”이라 한다)의 기술문제 해결 지원과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산학협력의 실질적인 중심축 역할을 한다. 또한, 기술이전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교내 특허 및 기술관리를 통한 산업체와 연계
2. 가족기업 및 산업체의 현장실습 지원을 통한 기술 실무 교육
3. 학생 창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신산업 창출의 토대 마련
4. 재직자 교육을 통한 기술 교육 및 산학 협력 영역의 확대
5. 각 정부 재정지원 교육사업 / 연구사업에 수반되는 산학연계 활동
6. 기업의 수요기술 맞춤형 지원 및 교원 참여를 통한 산업기반기술의 저변 확대
7. 특화산업분야 발굴을 위한 기업협업센터 설립 및 운영

제4조(기업협업센터 기능) 기업협업센터는 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 활동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기업 맞춤형 재직자 교육과정을 개발·운영하여 지역기업 재직자 전문역량 강화
2. 체계적인 산학협력 활동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가족기업 유료화를 통한 수익 창출
3. 기업의 문제를 대학 내 전임교원과 협업하고 해결하는 기술자문 서비스 제공
4.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산학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기업-대학 간 산학협력 강화

## 제2장 조 직

제5조(조직) ① 본부는 본부장과 행정직원 및 운영위원회로 이루어진다.

② 본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본부장은 본부를 대표하고 통상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
- ④ 본부장은 본부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⑤ 본부는 교내 기업지원 기관(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, 공동기기센터, 현장실습지원센터, 창업보육센터 등)과 협력하여 기업을 지원한다.
- ⑥ 본부는 산하에 기업협업센터를 설립하여 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 활동 수익을 창출한다.

제6조 (운영위원회) ① 본부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본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이 수행하며, 위원은 본교의 교직원 중에서 구성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
2. 본부의 사업계획과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3.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 제3장 기 타

제7조 (비밀누설금지) 운영위원 및 본부 관계자는 업무상 취득한 기술상당 기업의 기술 및 영업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8조 (기 타)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16. 3. 3.)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11. 1.)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 1. 2.)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